#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18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신성범・박정하・조은희

이만희 · 김승수 · 박대출

김종양 · 정희용 · 박준태

신동욱 • 유상범 • 조배숙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 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 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 법률 제 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5호·제5호의2의 사항 및 같은 항 제7호 중 청소년의 출입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28조제1항제 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제28조제4호"를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8조제8항 전단 중 "제28조제2호의2"를 "제28조제1항제2호의2"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2호"를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제3호"를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2호"를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28조제3호"를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5조제3호의2 중 "제28조제4호"를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제28조제7호"를 "제2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48조제1항제3호 중 "제28조제1호"를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8조제5호"를 "제28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5 호 중 "제28조제6호"를 "제28조제1항제6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제1 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
사항) (생 략)	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
	제5호ㆍ제5호의2의 사항 및 같
	은 항 제7호 중 청소년의 출입
	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
	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
	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
	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
	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
	<u>다.</u>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생 략)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2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 · 인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	
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 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 등 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 등 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 야 하고, 제5호 중 인터넷컴퓨 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에 따른 준 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 변조 또는 도용으 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 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 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 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략)

③ ~ ⑤ (생 략)

제36조(과징금 부과) ①특별자치 저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게임물 관
런 사업자가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36조(과징금 부과) ①

군수・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1. (생략)
- 2. 제28조제4호, 제5호, 제5호의
  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생 략)
- ② ~ ④ (생 략)
-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⑦ ㅈ (생 략)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 조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 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 선하거나 그 기기·장치 등을

<u>.</u>
<b>.</b>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제1항제4호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제28조
제1항제2호의2

개	선	또.	느	삭제	하고	근록	하는	등
의	시	정극	을	명할	수	있다	. 시경	성명
령	0	전	에	문화	·체-	육관	광부정	) 관
은	시	정	방	안을	정	하여	이에	따
를	것	을	권	고할	수	있다	7.	

## ⑨ ~ ⑪ (생 략)

제39조의2(포상금)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있다.

- 1. <u>제28조제2호</u>의 규정을 위반 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 2. <u>제28조제3호</u>의 규정을 위반 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 3. 4. (생략)
- ② (생략)
-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

⑨ ~ ①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포상금) ①
,
1. <u>제28조제1항제2호</u>
2. 제28조제1항제3호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①
1. <u>제28조제1항제2호</u>

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 1의2. 제28조제1항제3호---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5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 3의2. 제28조제1항제4호-----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물을 제공한 자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6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 2. 제28조제1항제7호----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 년을 출입시킨 자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8조(과태료) ① -----

어느 하니	구에 해당	당하는 7	아에 :	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	부과
한다.				

- 1. ~ 2의7. (생략)
- 3. <u>제28조제1호</u>의 규정을 위반 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4.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 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 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 소년을 출입시킨 자
- 5. <u>제28조제6호</u>의 규정을 위반 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6. ~ 8. (생략)
- ② (생 략)

<b>.</b>
1. ~ 2의7. (현행과 같음)
3. <u>제28조제1항제1호</u>
4. <u>제28</u> 조제1항제5호
5. <u>제28조제1항제6호</u>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